

“다국적 기업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검토 및 Risk 절감을 위한” 세인관세법인의 ACVA 컨설팅 서비스 소개

관세청은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마찰을 줄이고자 ACVA 제도를 2008년 도입한 이래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관세조사 간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5년 간 관세조사에 따른 추징액 중 다국적 기업의 비중이 약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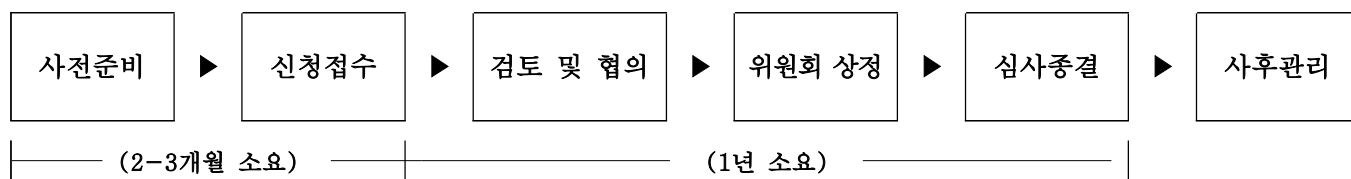
* ACVA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for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세인관세법인은 ACVA 신청 절차 전반에 걸쳐 컨설팅 및 조력 역할을 수행을 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방법이 인정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과세관청에 관철시키기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I. ACVA란?

ACVA란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수입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 상호간의 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로, 이 제도를 통해 납세의무자는 관세 등 수입비용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사후심사에 따른 추징 및 처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경영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 ACVA 신청절차



II. ACVA 컨설팅 필요성 및 기대효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에서 수입자가 내국세 과세목적 또는 이전가격 결정방침에 따라 산정한 가격은 품목별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는 관세부과의 관점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인정 및 마찰이 사후심사 간 발생하는 경우, 그 대응준비에 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불복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사전에 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과세관청에 신청하고 인정받는 ACVA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3년간 관세조사가 유예되는 등의 이점이 있으며, 이를 포함한 세부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조사의 유예 및 면제

ACVA로 인해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과세가격의 적정성에 한하여 정기 관세조사를 유예할 수 있음

2. 가산세 면제

- ACVA 신청부터 잠정가격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확정가격 신고시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 면제 가능
- 신청 이전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 면제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ACVA 결과에 따라 신청 이전 신고 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4.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 요건(일부) 충족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잠정가격신고 가능하도록 절차 마련('17)

5. 예측가능성의 확보를 통한 경영안정성 확보

물품의 수입가격에 대하여 소비자와 과세관청이 신뢰할 수 있으며, 사후심사나 불복에 대한 우려 제거

III. 세인관세법인만의 ACVA 컨설팅

- ✓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다국적기업 이전가격 심사 경험 보유 (45개 업체 이상)
- ✓ 내국세를 고려한 관세 평가 관점의 효과적인 접근 가능
- ✓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Data base 보유 및 대응 이력을 통해 전략적인 논리 개발 수월
- ✓ 품목군별 비교가격 검토 등 Comparable Company에 대한 세분화 접근가능
- ✓ CPS 분석 시스템(자체개발 분석 시스템)을 통해 수입유형 Case화 및 비정규 물품에 대한 별도 대응 전략 수립으로 Risk 최소화 (*T/P대로 신고 되지 않는 Case, 시제품, TEST 목적 수입물품 등)

| Contact



손해영 관세사

02-6929-3456
hyson@esein.co.kr



박지연 관세사

070-4353-5154
jypark2@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0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